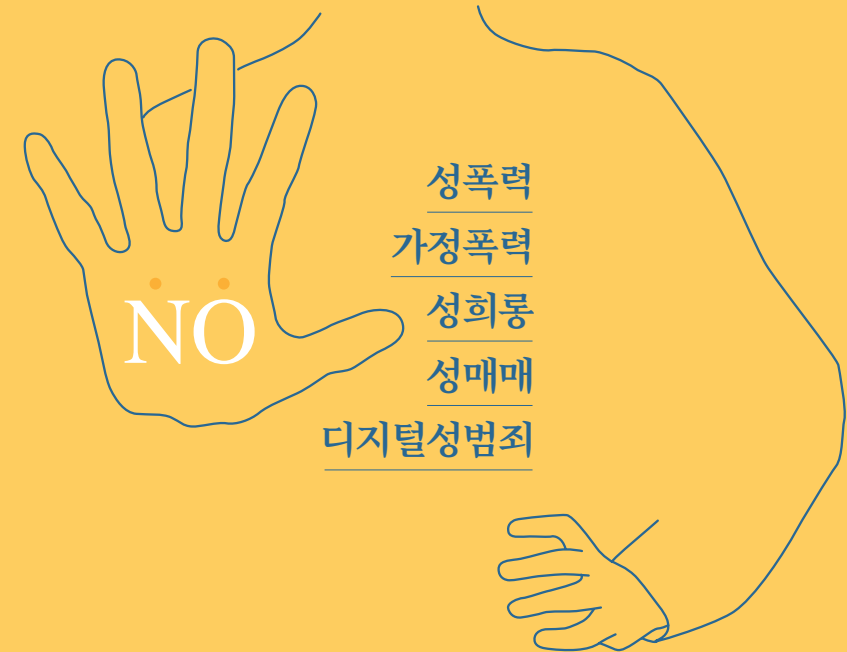


• 2021 •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

• 2021 •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

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무료 지원합니다.

‘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’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**시민의 삶터와 일터로 찾아가는 교육**입니다. 교육을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없이 전문강사의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| 문의 |

Tel 053-219-9975 | ARS 1661-6005 (연결 후 영남 권역 ⑤번 선택) | E-mail gnals@dwff.or.kr



EQUALITY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
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
PROMOTION AND EDUCATION



DAEGU DAEGU METROPOLITAN CITY



• 2021 •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

- 일반 시민 대상 성폭력, 가정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교육 참가자가 지역 곳곳에서 안전 파수꾼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.

목적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“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”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
기간 2021년 1월 ~12월 (조기 마감 될 수 있음 | 교육 실시 최소 14일 전 신청)

규모 10명~100명 내외 (교육대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)

- 주요내용**
- 성폭력·가정폭력·성희롱·성매매·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(분야별 1시간)
 - 폭력예방 통합교육도 가능 (2시간 / 유형별 각 1시간)
 - 교육 수요자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, 가정폭력,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교육 가능
 - 비대면 교육 가능

신청방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신청 ▶ ‘예방교육통합관리’ 검색 <http://shp.mogef.go.kr>

일반국민 교육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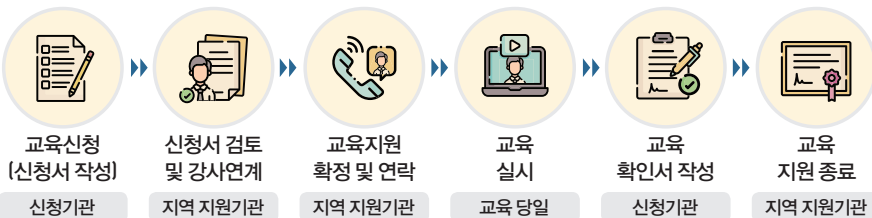


신청안내



폭력예방교육 신청하러가기

교육지원 절차



교육대상

*일반 시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

민간기업 종사자	• 운송업 종사자, 건설현장 근로자, 농공단지·공업단지 종사자 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유관업무 종사자 - 의료기관 종사자 : 의사·간호사·약사 등 - 교육기관 종사자 : 학습지 방문교사, 학원·교습소 종사자 등 • 사회초년생,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등 • 기타 일반 기업 근로자 등
지역사회 성원	• 지역사회 지도자 : 이통반장, 주민자치위원, 부녀회, 지역 사무장 등 • 지역안전프로그램 참여자 : 아동안전지킴이, 자율방범대원, 의용소방대원 등 • 지역사회 소상공인·자영업자 : 상가번영회, 전통시장 상인회 등 • 지역 복지관, 여성회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자 • 기타 지역주민모임 등
학부모	• 유치원(어린이집)·초·중·고교 학부모 • 기타 지역아동센터, 복지관 등의 학부모 모임 • 할머니, 할아버지, 삼촌, 고모, 이모 등 양육자
이주민	• 결혼이주여성, 북한이주민 및 이주노동자 등
장애인	•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등
노인	• 노인대학,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관련시설 이용자 •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입소자,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
사회복지 및 청소년수련 시설 종사자	• 사회복지시설종사자 : 장애인 및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 • 아동청소년관련기관종사자 : 아동·청소년 수련시설 등 종사자 • 돌봄 노동 종사자 : 간병인, 요양보호사,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유관업무 종사자 : 방문지도사, 아이돌보미 등 • 상담가 : 상담가 및 상담가 양성과정 수강생 등
아동·청소년	• 학교 밖 청소년 • 고3 예비사회인
대학(원)생	• 대학교 및 대학원 신입생
기타	• 시민사회단체 활동가, 자원봉사자 • 문화예술인, 체육인 등 • 미혼모·부 등 한부모가족 센터, 노숙인 쉼터 등 시설 입소자 • 기타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 ※ 초·중·고등학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지원

※ 공공기관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, 유치원·어린이집 등)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 지원에서 제외